

####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양도담보권 침해)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파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소외 ◈◆◈로부터 소외 ◈◆◈ 소유의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습니 다.
- 2. 위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은 위 기계에 대하여 원고를 양도담보권자로 하는 양도 담보를 설정하되 위 기계의 점유는 소외 ◈◆◈가 계속 하기로 하는 점유개정 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로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까지 소외 ◈◈◈가 원 금 10,000,000원과 이자 금 1,000,000원의 합계 금 11,000,000원을 갚지 못하면



위 기계를 원고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집행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3. 그런데 소외 ◈◈◈는 위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20○○. ○. ○○.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위 기계를 20 ○○. ○○. ○○. 금 9.500.000원을 받고 소외 ◆◆◆에게 처분하였습니다.
- 4.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 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 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피고는 원고가 위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뒤에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뒤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기계를 소외 ◆◆◆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계의 대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 ○ 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및동산양도담보계약공정증서

1. 갑 제2호증

처분사실확인서

#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ul> <li>·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메득금에서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고,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뒤의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급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관계없이,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li> <li>·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수락하는 광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양도담보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정 경우의 양도담보권원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li> </ul>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하기도 함.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